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51
----------	------

2025년 2월 25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2월 3일, 서울특별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4년 2월 25일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정원도시국장]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위임 및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의2 신설)
- 그 밖의 문구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11. 14. ~ 12. 4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제35조1)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‘동물보호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는 ‘동물보호센터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 조례 제24조2)에 따라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음.
-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의 주요 기능은 법 제35조제3항3)에 따른 ‘동물의 구조·보호’,

- 1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2) 제24조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
    2.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, 보호, 분양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리
    3.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종성화 수술
    4.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
    5.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
    6.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
    7.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동물 의료지원
    8.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
    9.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
    - 9의2.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(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)의 예방 및 완화 지원
    10.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
    11.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
    12.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  - ③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3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
  2.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
  3.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
  4.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  5.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
  6.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
  7.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

‘동물의 기증·분양’, ‘유기·유실 동물 예방’, ‘동물학대 행위 근절 홍보’ 등으로 서울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총 3개소를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고, 1개소를 신규 설치<sup>4)</sup> 중에 있는 등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.

- 안 제24조의2는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,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시장과 별도로 구청장에게도 ‘동물보호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이 ‘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할 것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는 자치구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재 법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, 가능할 것으로 역량이 검증된 민간기관(대학, 단체 등)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, 민간 위탁 근거 마련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.

-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증한 반면, 동물학대, 동물유기,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, 올바른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요구될 것임.

- 8.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
- 9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4)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3개소 : 마포센터(서부권), 구로센터(서남권), 동대문센터(동부권)

- 2024년 실적
  - 유기·사육포기·피학대 동물 입양·기증(110마리), 검진·중성화 등 치료(2,333건)
  - 반려동물 시민학교(2,381명), 어린이교육(2,789명), 센터 자체 교육(864명)
  - 민간보호시설 등 의료지원(354마리), 시민자원봉사 활동(884회, 2,294명)
  - 입양문화 홍보 캠페인(9회), 홈페이지 운영(130,199명 방문) 등

명 칭	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(17.10.)	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(21.1.)	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(23.11.)
소재지	마포구 매봉산로 31 (610.5㎡)	구로구 경인로 472 (206.6㎡)	동대문구 무학로 201 (552.9㎡)
시 설			

-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추진 1개소 : 강동센터(동남권)
  - 소재지 : 강동구 길동 12-7
  - 건축규모 : 연면적 1,363.65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  - 사업기간 : '24.1.~'27.9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요지 :

-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삭제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삭제함.

## 2. 주요 골자

- “민간위탁 관련 조항” 삭제(안 제24조의2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 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제24조의2(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위임 또는 위탁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24조의2(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”를 “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7조제3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7조제3항”으로, “정상적”을 “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”를 “시행규칙 제11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”을 “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“긴급복지지원법 제2조”를 “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

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 <p>7. (생 략)</p> <p>8. “사육포기 동물”이란 「<u>동물보호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<u>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<u>정상적으로</u>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.</p> <p>9. ~ 16. (생 략)</p> <p>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</u>(이하 “<u>시행규칙</u>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시행규칙 제27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<u>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</u>----- -----.</p> <p>9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시행규칙 제11조에서</u> ----- -----</p>

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  
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

2. 등록대상동물의 이름, 소유자의  
연락처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 
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 
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  
할 것

3. (생 략)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시장 또는  
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 
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 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  
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  
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8조(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)  
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  
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 
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  
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 
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 
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6.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 
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

-----  
-----

2. -----  
----- 시행규칙 제12조에  
따른 -----  
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-----  
-----  
----- 시행규칙 제12조의  
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)  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---  
-----

7. (생 략)

② (생 략)

〈신 설〉

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  
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  
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 
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 
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 
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 
등을 지원할 수 있다.